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수임무공로자 의료지원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 포함〉

-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64호)
-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84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개 요	1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964호)	1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84호)	2
II. 검토의견	4
1. 특수임무공로자 의료 지원 확대 등	4
2.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 포함	11
※ 참고자료	16

I. 개 요

1.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19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7인
- (2) 제 안 일 : 2025. 8. 4.
- (3) 회 부 일 : 2025.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예우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특수임무부상자는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특수임무공로자는 부상을 입지 않은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행법의 체계에 따르면, 특수임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히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예우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동일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더라도 부상 여부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간의 불

합리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임무부상자에게만 제공되었던 진료 및 수송지원을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2.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3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6.
- (3) 회 부 일 : 2025.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를 상이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공로자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였음에도 의료지원이 부족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

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II. 검토의견

1. 특수임무공로자 의료 지원 확대 등

- 개정안은 ① 특수임무공로자에게 특수임무부상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②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환 진료시 본인 부담을 폐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동아 · 이병진의원안
제33조(진료) ① <u>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진료) ① <u>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u> ----- ----- -----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동아·이병진의원안
④ <u>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u>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u>특수임무공로자</u>	④ <u>특수임무공로자가</u>----- ----- ----- ----- ----- ----- -----. ⑤ ----- ----- -----. ----- ----- ----- ----- ----- ----- ----- -----. <삭 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동아·이병진의원안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¹⁾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로 구분²⁾됨.

특수임무부상자의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
되,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진료시 10%의 본인부담금이 있고³⁾,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가 그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 진료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음⁴⁾.

○ 그런데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상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의료지원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부상자에 준하는 의료 지원을 하고 특수임무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특수임무 부상자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진료(100% 지원)	동 일
	7급 상이자 비상이처 진료시 10% 본인부담	<u>7급 상이자 본인부담 폐지</u>
특수임무 공로자	보훈병원 감면진료(60% 지원)	<u>보훈병원·위탁병원</u> <u>국비진료(100% 지원)</u> * 본인부담금 규정 가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 다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체적 희생이 있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되,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10% 본인 부담이 있고, 신체적 희생이 없는 비상이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는 30~90% 감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 체계>

구분		의료지원 시설	감면율
상이유공자 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100% *일정 등급 이하: 상이처 외 진료 시 90%
비상이 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90%
	재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병원 100%, 위탁병원 60%
	무공수훈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보국수훈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50%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희생자 유가족 30%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위탁병원	위탁병원 60%

자료: 국가보훈부

- 둘째, 상이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특수임무유공자 전체에 대하여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⁵⁾와 현행법 제5조의 예우원칙⁶⁾에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상이 유공자 및 7급 상이자 의료 지원 비교⁷⁾>

구 분	상이군경 (전·공상)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무공수훈자 4·19공로자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상이처+일반질병 국비지원(100%)	상이1급~6급	상이1급~6급	장해1~11급	-	-
상이처(100%)+ 일반질병 국비지원(90%)	상이7급	상이7급	장해12~14급	-	-
감면진료(50~90%)	-	60% (공로자)	50% (기타희생자)	60% (모든 대상)	90% (모든 대상)

- 셋째, 개정안에 따라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5년간 131억원 (연평균 2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예우 원칙)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7) 보훈병원 기준임.

<진료비 추가 소요액(2027 ~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보훈 병원	10% 본인 부담 폐지	15	19	23	29	36	96
	특임공로자 100% 지원	967	1,042	1,121	1,206	1,295	4,436
	소계	982	1,061	1,144	1,235	1,331	5,753
위탁 병원	10% 본인 부담 폐지	10	12	15	18	21	65
	특임공로자 100% 지원	1,404	1,429	1,454	1,480	1,506	5,867
	소계	1,414	1,441	1,469	1,498	1,527	7,349
합계		2,396	2,502	2,613	2,733	2,858	13,102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의료지원 확대 요구를 정책 우선순위⁸⁾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신체적 희생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지원을 하는 것은 의료지원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비상이 유공자 및 7급 상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예우원칙과 의료지원 체계를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8) (1단계) 연령 제한 폐지 → (2단계) 보훈병원 감면을 확대 → (3단계) 비상이유공자 등 위탁병원 대상자 확대 순으로 추진

2.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특수임무공로자 포함

-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김동아의원안은 ‘특수임무공로자’, 이병진의원안은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김동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및----- ----- ----- ----- ----- ----- ----- ----- ----- ----- ----- ----- ----- ----- -----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 --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를-----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김동아의원안	이병진의원안
할인할 수 있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보훈 관계법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과 동승보호자 1인에 대하여 수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요금 감면을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⁹⁾.

○ 특수임무유공자 중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은 특수임무부상자에 한정되는데,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1~7급)¹⁰⁾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상이등급에 미달할 경우 특수임무공로자로 등록되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됨.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법률 및 감면대상>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국가유공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 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상이등급 1급 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내용>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감면률
열차(고속철 포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연 6회 무임 후 50% 감면
도시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버 스	시내버스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시외버스 70% 감면, 농어촌버스 10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고속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5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내항 여객선 (연 6회/도서거주자 연 12회)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무 임
		6급 이하 상이자	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7급은 국가유공상이자 1~5급에 준하며, 8~14급은 할인대상

※ 애국지사, 1급 상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도 특수임무부상자와 같이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상이등급이 없는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확대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감면한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약 6억 7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 이용 추가 소요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인원	1,398	1,373	1,348	1,324	1,300	6,743
소요예산	126	124	121	119	117	607

* 인원: 최근 5년('20~'24 말) 연평균 감소(1.8%) 추계 반영

** 단가: 25년 예산(10,729백만원) / 24년말 기준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119,080명) = 90,100원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상이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취지 및 다른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이 없는 특수임무공로자를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는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도록 하는 보훈 원칙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1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수혜 사항

구분	내 용
수당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과 중복 불가, 2022.2.18.부터 시행
교육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자, 공로자 본인 및 자녀,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자·공로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가점취업,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 ※ 2016.11.30.이후 등록신청자 : 부모, 비상이자 및 상이 7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지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 국비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단, 전·공상군경 복합등록자의 경우 20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에 대해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보철구 지급 - 응급진료 :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훈관서 신고 * 14일경과 3년 이내 신고시 처음 입원한날부터 14일의 진료비만 지원('18.7.31 이후 이용자만 소급적용)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전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가족 - 보훈병원 진료 : 6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대부지원	○ 대상: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기타 대상자와 배우자,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수송시설 이용지원 : 부상자 본인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성·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텐포드)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영구용태극기·대통령령의 근조기 증정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2

현행법상 의료지원 체계

근거 법률	적용 대상자	보훈병원	위탁병원
①독립 유공자법	▶ 애국지사	▶ 모든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독립유공자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②국가 유공자법	▶ 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2.7.1.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재일학도의용군인	▶ 면제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252,000원 한도 내 지급
	▶ 무공수훈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160,000원 한도 내 지급
	▶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국가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2.7.1.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③보훈 보상자법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수령하는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또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④5·18 유공자법	▶ 5·18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기타5·18희생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5·18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해당 없음
⑤특수임무 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게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선순위유족이 부모인 경우 모두 지원 ** '16.6.23. 이전 등록자는 유가족 모두 지원	▶ 해당 없음
⑥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 환자(등급판정자)	▶ 인정 질병을 포함한 모든 질환 전액 지원(위탁병원은 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 * 단, '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경도 판정자는 인정 질병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등급미달자)	▶ 인정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 시 국비 지원	
⑦참전 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 미지원 ** '22.10.1.부터 약제비 252,000원 한도 내 지급
⑧제대군인법	▶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진료 시 국비 지원	
	▶ 장기복무제대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군 복무 중 발병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비급여·약제비 미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3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 현황

구분		이 용 대 상	할인율	
공공 기관	열차 (KTX·SRT 포함)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지 하 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 보훈보상(지원공상) 비공공기관 수송시설인 민영노선(공항철도, 신분당선) 제외	무 임	
비공공 기관	버	시내버스 *좌석·광역(급행)·마을 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 임
		시외버스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7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스	고속버스 * 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국내 여객선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 임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육상거주자 : 연 6회 도서거주자 : 연 12회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50% 할인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30% 할인	
	국제여객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0% 할인 * 한국 ↔ 중국 및 일본(한국 발권 선권에 한함) * 일본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자료: 국가보훈부

